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7호 2022. 5. 18.(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94호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95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2896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정선군 조례 제2897호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17

○ 정선군 조례 제2898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899호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25

○ 정선군 조례 제2900호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31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66호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36

○ 정선군 고시 제2022-68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3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563호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57

○ 정선군 공고 제2022-571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60

○ 정선군 공고 제2022-60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5. 13.)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4호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인 : 정선군의회 의장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그리고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2. 청인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3. 특수관인 :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되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4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

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정선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 관리자 등)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 표]

공인의 규격

(제3조 관련)

공인의 종류		규 격
청 인		3.5cm 정사각형
직 인	정선군의회 의장	2.0cm 정사각형
	정선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2.4cm 정사각형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2.0cm 정사각형
특수관인	재무관, 지출원	2.0cm 정사각형
	출납원	1.8cm 정사각형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제7조제2항 관련)

<table>
<tr><td>관인 명칭</td><td colspan="4"></td></tr>
<tr><td>종류</td><td colspan="2">[ ] 청인 [ ] 직인 [ ] 특수관인</td><td>관리부서</td><td></td></tr>
<tr><td rowspan="8">[ ] 등록
[ ] 재등록</td><td rowspan="8">(인 영)</td><td>등록일(재등록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새긴 날짜</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새긴 사람</td><td colspan="2">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td></tr>
<tr><td>최초 사용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재료</td><td colspan="2"></td></tr>
<tr><td>등록(재등록)
사유</td><td colspan="2"></td></tr>
<tr><td>관보 공고</td><td colspan="2">년 월 일
공고 제 - 호</td></tr>
<tr><td>비고</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폐기</td><td rowspan="8">(인 영)</td><td>등록일(재등록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폐기일(분실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폐기 사유</td><td colspan="2">[ ] 닳아 없어짐 [ ] 분실 [ ] 기타( )</td></tr>
<tr><td>폐기 방법</td><td colspan="2">[ ] 이관 [ ] 별도보관 [ ] 기타( )</td></tr>
<tr><td>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td><td colspan="2">소속:
직급: 성명:</td></tr>
<tr><td>관보 공고</td><td colspan="2">년 월 일
공고 제 - 호</td></tr>
<tr><td>비고</td><td colspan="2"></td></tr>
</table>

<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폐 인 대 장

(제7조제3항 관련)

공인명	신 조 연월일	사용개시 연월일	규 격	서 체	폐 인		폐인의 인영
					연 월 일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제8조제1항 관련)

<table>
<tr><td>관인 명칭</td><td colspan="5"></td></tr>
<tr><td>종류</td><td colspan="5">[ ] 청인 [ ] 직인 [ ] 특수관인</td></tr>
<tr><td rowspan="9">[ ] 등록
[ ] 재등록</td><td rowspan="4">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등록일(재등록일)</td><td colspan="4">년 월 일</td></tr>
<tr><td>등록(재등록) 사유</td><td colspan="4"></td></tr>
<tr><td>관리부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td></tr>
<tr><td rowspan="5">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td><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초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비고</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9">폐기</td><td rowspan="9">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폐기일</td><td colspan="4">년 월 일</td></tr>
<tr><td>폐기 사유</td><td colspan="4"></td></tr>
<tr><td>폐기한 사람</td><td colspan="4">소속: 직급: 성명:</td></tr>
<tr><td colspan="5">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td></tr>
<tr><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종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보고서

(제10조 관련)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인 인영부

(제11조 관련)

기관명 : 정선군의회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인을 등록·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공인의 교부, 등록, 재등록,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7조)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마. 공인의 공고,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0조)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4.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5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09.04.08, 개정 2009.10.20., 2011.04.20.>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와 관련)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정 선 읍	봉 양 리	봉양리 일원 ,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편입
	북 실 리	북실리 일원
	덕 송 리	덕송리 일원
	애 산 리	애산리 일원 ,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제외
	신 월 리	신월리 일원
	덕 우 리	덕우리 일원
	여 탄 리	여탄리 일원
	회 동 리	회동리 일원
	용 탄 리	용탄리 일원
	광 하 리	광하리 일원
	귤 암 리	귤암리 일원
	가 수 리	가수리 일원

□ 제안이유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역 조정(별표)

나. 조정내역

1) 봉양리 :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 편입

2) 애산리 :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 제외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4.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6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무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이”를 “간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를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업무담당부서장---.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간사가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삭 제>
2. 정선경찰서 경무과장	<삭 제>
3.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삭 제>
4. 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삭 제>
5.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삭 제>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정선경찰서 업무분장에 따른 변경 사항과 제도 운영 중 나타나는 개선점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사를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나. 실무협의회 주관을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에서 간사로 개정(안 제8조제1항)

다. 실무협의회 위원을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개정(안 제8조제3항)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5.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7호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사업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8. 성 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
9. 정선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에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정선군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협조 및 지원(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비용의 보조 및 지원 절차(안 제4조 ~ 제5조)

라. 보조금 관리 및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 제7조)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4.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8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추리본부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추리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③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제5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체험시간	요금	비 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체험료 (1개 테마)	회당 50분	18,000	1인 기준

□ 제안이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조성한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관리·운영 등(안 제4조 ~ 제6조, 제8조)

다. 시설의 이용 제한(안 제7조)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4.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899호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단체는 군과 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기기 사용
4.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5.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위원회) ①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정선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환경·교통·청사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 또는 시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포상·행사 등 시책추진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개선 지원사업
3. 에너지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5.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지원

제16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군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발굴·시행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각 부문 에너지시책(안 제4조 ~ 제8조)

다.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라. 재정지원(안 제15조)

마.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 제17조)

제280회 정선군의회(2022. 04 .29.)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5.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정선군 조례 제2900호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군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선군이 정원산업의 육성, 정원치유 및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별·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
11. 정원 이용자의 안전증진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민참여 유도)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원 관련 군민협의

체 구성 및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군민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④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해설사 또는 관리자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또는 정원·군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안 제4조 ~ 제5조)

다. 군민참여 유도(안 제6조)

라.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안 제7조)

마.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제9조)

바. 군민정원사, 정원전문가의 양성, 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및 군민정원사, 정원전문가 활성화 등(안 제10조 ~ 제12조)

사. 포상(안 제13조)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66호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임계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을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임계건강공동홈 321㎡, 백두대간 임계역사문화관 497㎡
- 지 역 경 관 개 선 : 백두대간 능금뙈기쉼터, 능금가로길, 임계천 생태친수공간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지역활성화사업, ICT 및 재난대응체계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 금회 승인 :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지 견학, 임계활성화컨설팅

4. 사 업 비 : 5,846백만원(국비 4,092, 지방비 1,754)

○ 금회 승인 : 49백만원(지역역량강화 사업비)

5. 사업기간 : 2022년 6. 30. 까지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도시과 ☎560-2464)

정선군 고시 제2022-68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정 선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실효)

가. 교통시설

1) 도로

- 문곡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7	소로1-2 127-9도	소로1-3 590-25천	일반도로	정선고제83호 (01.11.17)	
변경	소로	2	14	8	국지도로	78	80-22구	소로1-3 590-25천	일반도로	정선고제83호 (01.11.17)	미집행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99	소로1-1 97-9전	100-1학	일반도로	정선고제83호 (01.11.17)	
변경	소로	3	10	6	국지도로	35	100-1학	100-1학	일반도로	정선고제83호 (01.11.17)	미집행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2	4	국지도로	112	소로1-3 590천	55-1답	일반도로	정선고제83호 (01.11.17)	실효

- 고한사북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629	영동APT 사북리 228전	중로2-3 사북리 432천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변경	소로	2	10	8	국지도로	238	사북리 229-2대	중로2-3 사북리 432천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미집행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2	14	8	국지도로	288	소로1-6 고한리 99-17철	막골주거지역계 고한리 50-18대	일반도로	강고제00호 (02.05.16)	실효
폐지	소로	2	34	8	국지도로	349	중로 2-8 고한리 170-1도	고토일주거지역계 고한리 산113임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실효
폐지	소로	2	36	8	국지도로	647	소로 2-34 고한리 216-20전	소로 2-40 고한리197대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실효
폐지	소로	2	40	8	국지도로	131	소로 1-21 고한리 201전	소로 2-36 고한리 203전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실효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669	부금소주거지역계 고한리 16-14전	중로 1-2 고한리 산216-2임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변경	소로	2	52	8	국지도로	549	부금소주거지역계 고한리 16-14전	고한리 12전	일반도로	정선고제29호 (02.05.16)	미집행구간의 실효

- 증산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3	6	국지도로	98	소로 1-7 무릉리 586-4철	소로2-13 무릉리582-6철	일반도로	정선고제28호 (02.05.16)	실효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62	소로1-7 무릉리522-5도	동측도시계획구역계 518-2잡	일반도로	정선고제28호 (02.05.16)	실효

2) 주차장

- 신동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노외주차장	신동읍 조동리 6-92대 일원	798	감) 798	-	정선고제27호 (02.05.16)	실효
폐지	3	노외주차장	신동읍 조동리 6-81대 일원	1,570	감) 1,570	-	정선고제27호 (02.05.16)	실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고한사북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사북제1공원	어린이 공원	사북리 227-2일원	1,550	감) 1,550	-	정선고제29호 (02.05.16)	실효
폐지	7	고한제2공원	어린이 공원	고한리 산146일원	1,600	감) 1,600	-	정선고제29호 (02.05.16)	실효

- 신동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조동제3공원	체육공원	신동읍 조동리 240 일원	26,900	감) 7,730	19,170	강고 제78호 (02.04.08)	미집행 구간의 실효

2. 실효일자 : 2022. 5. 16.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5.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문곡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14호선)

○ 기정

○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문곡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10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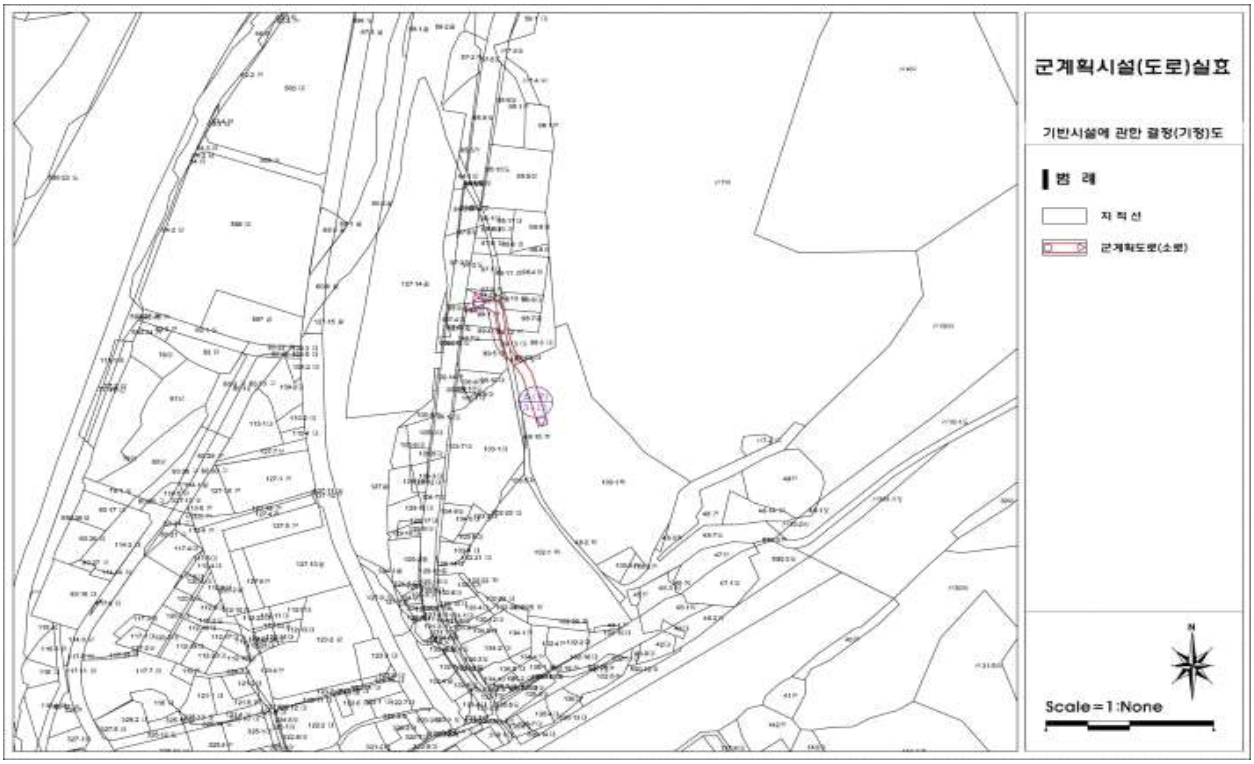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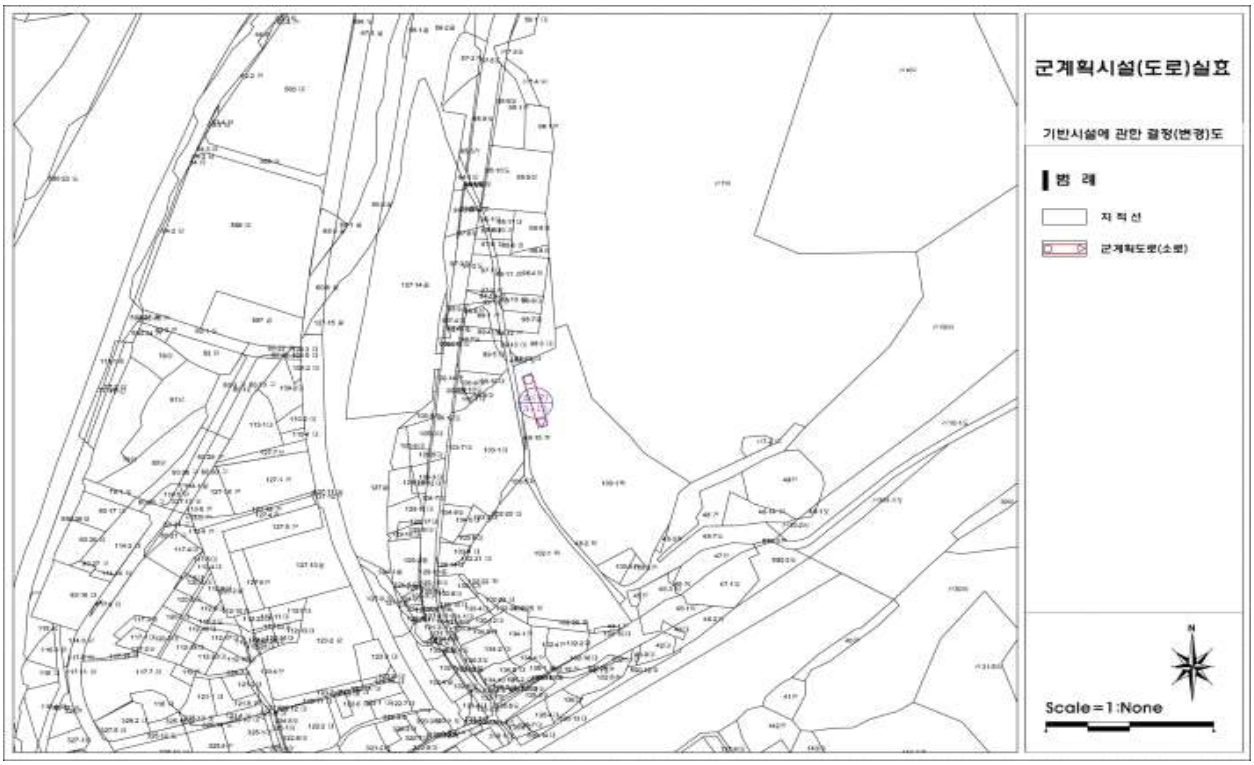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문곡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12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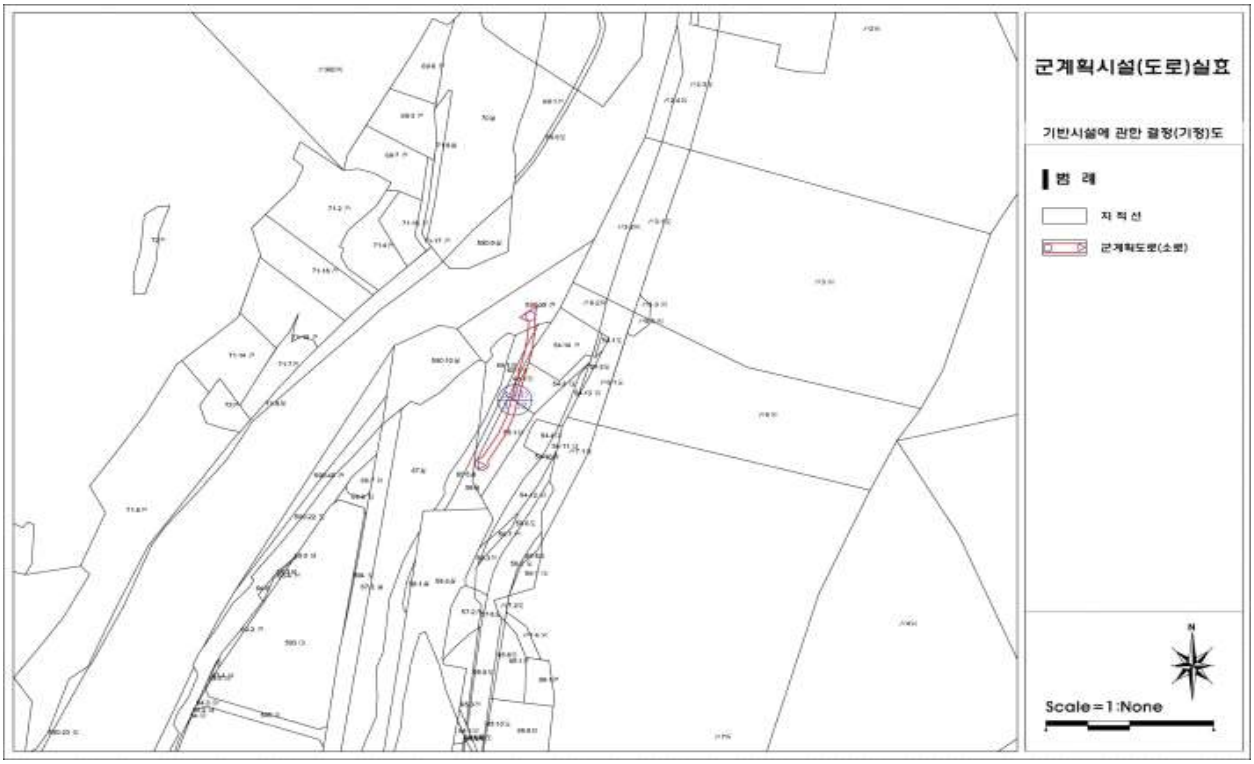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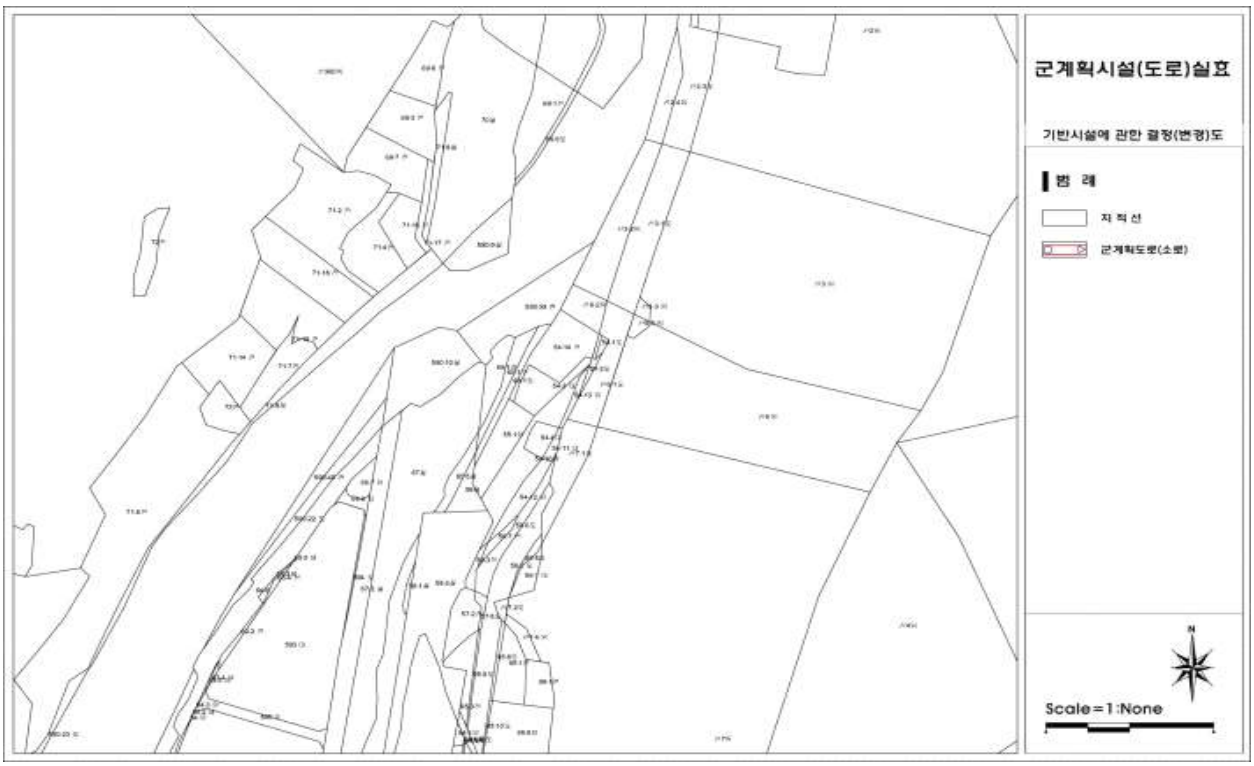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10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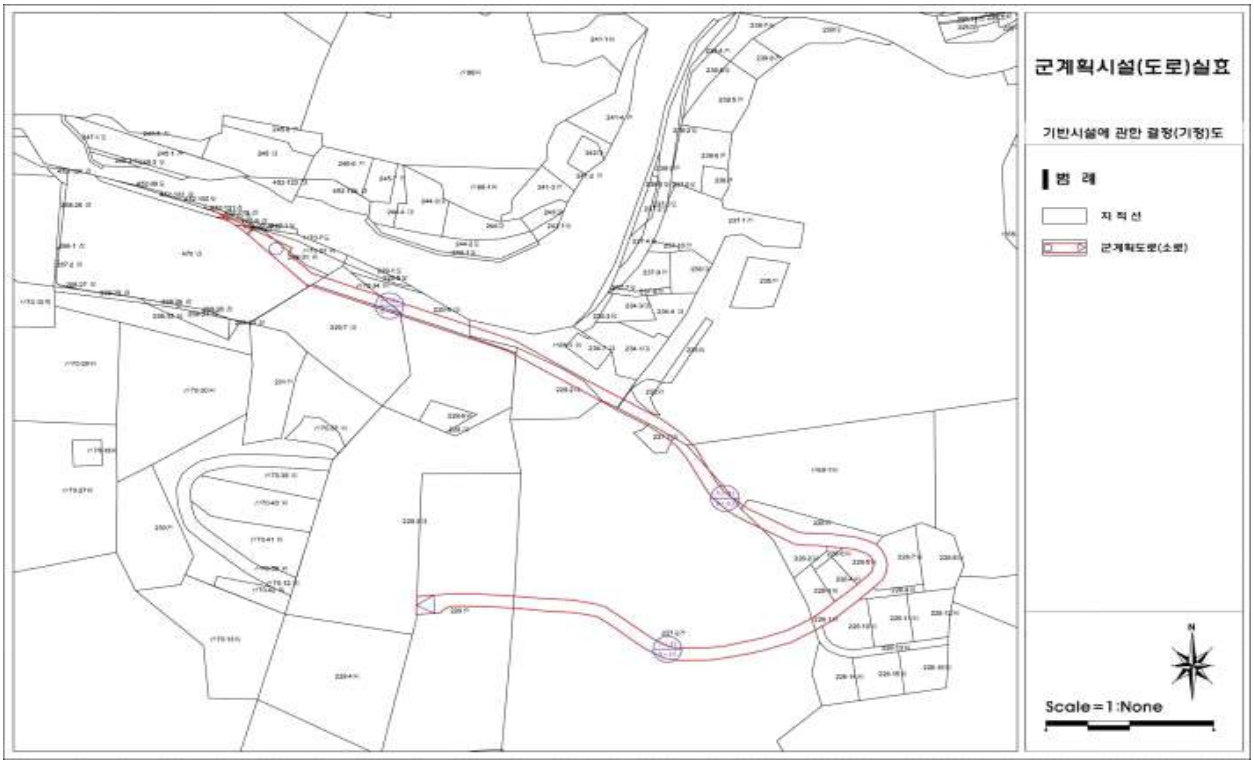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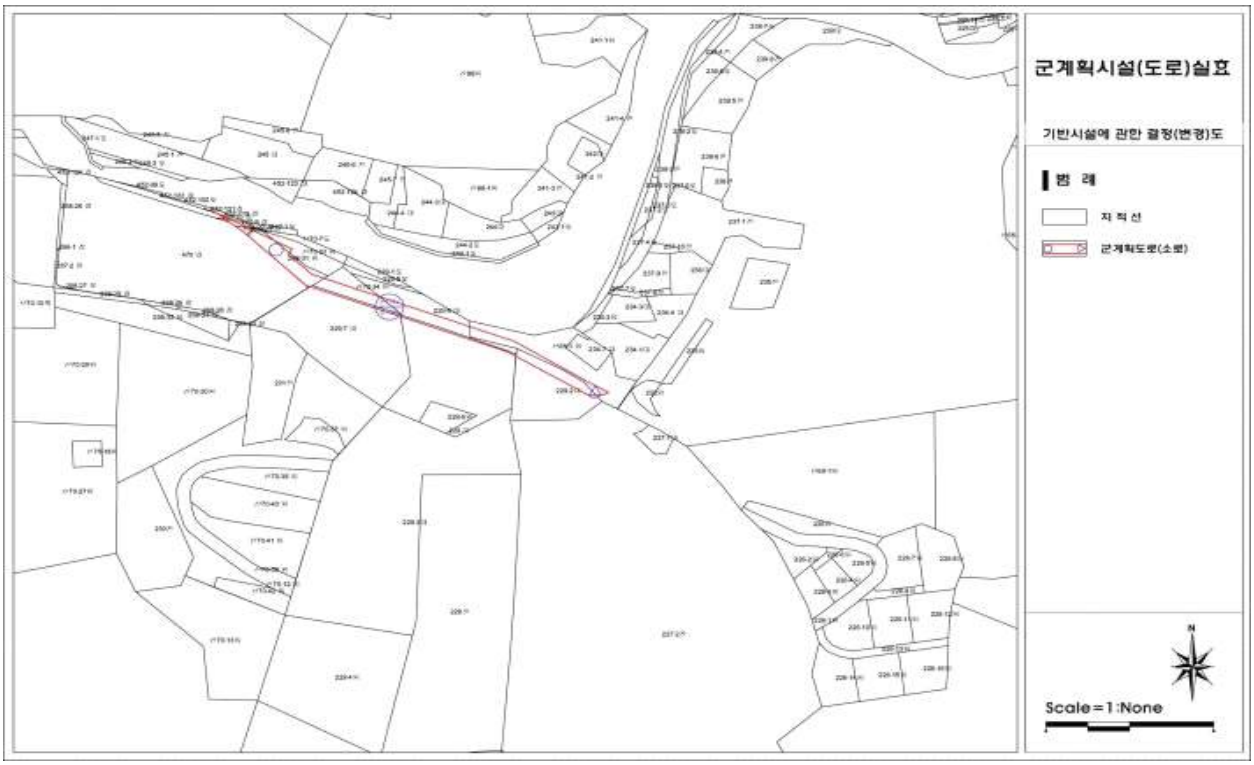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14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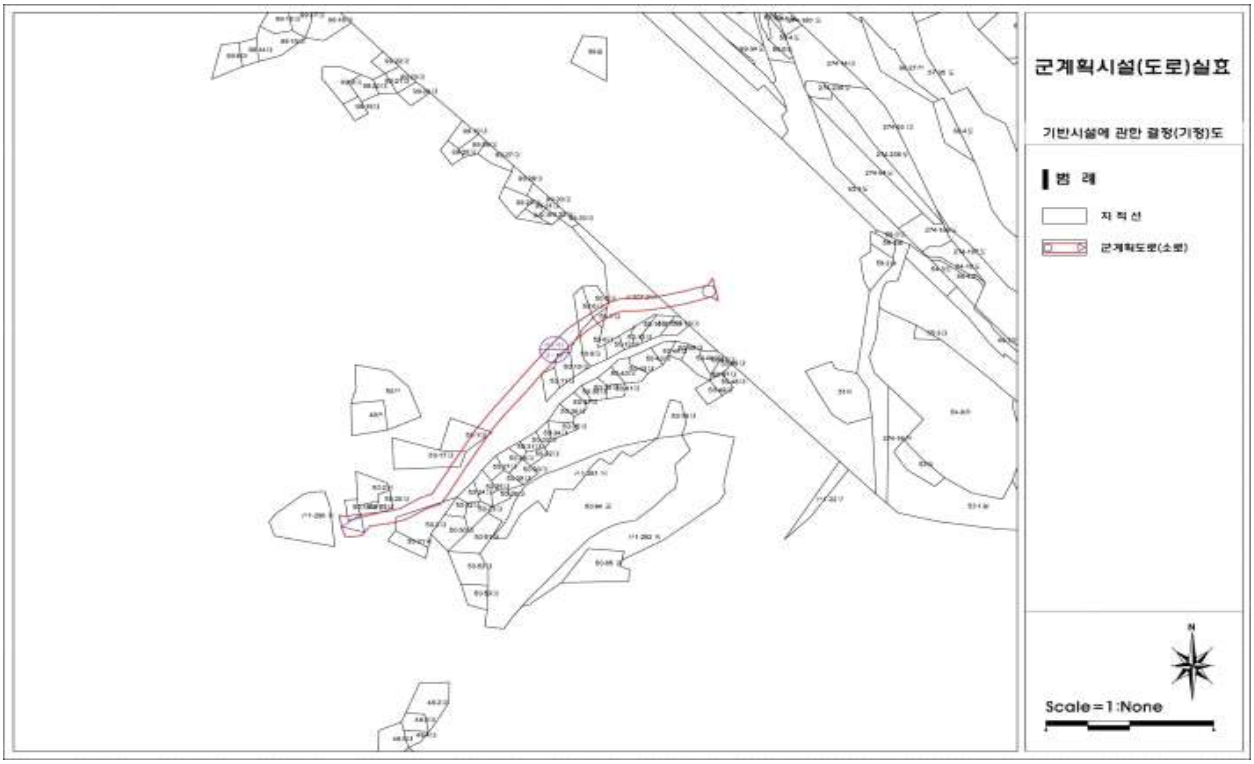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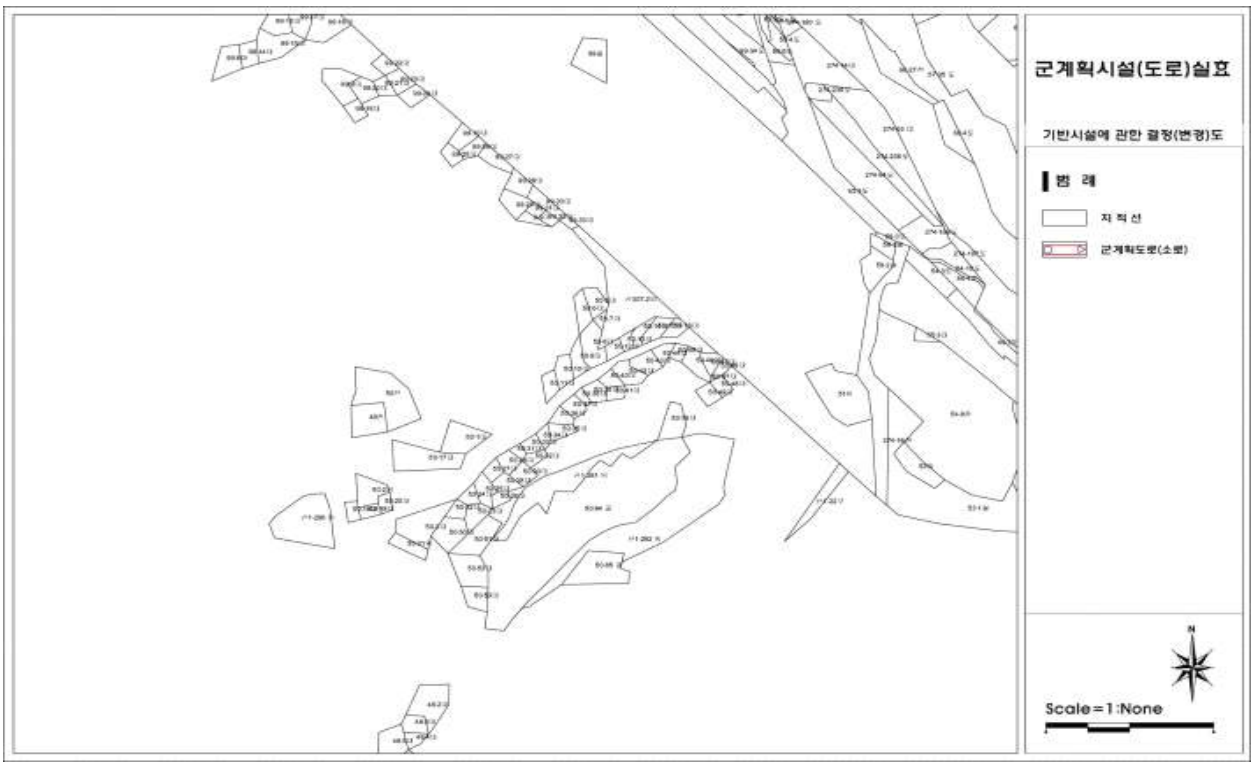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34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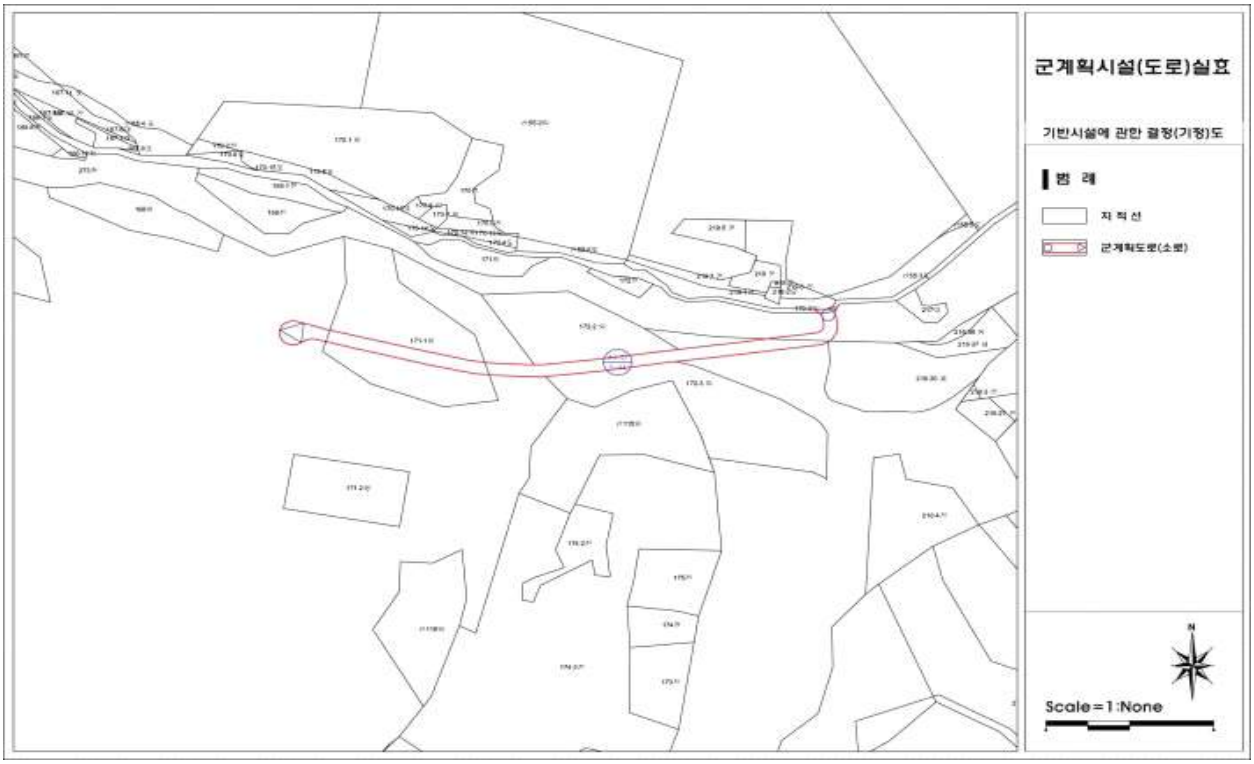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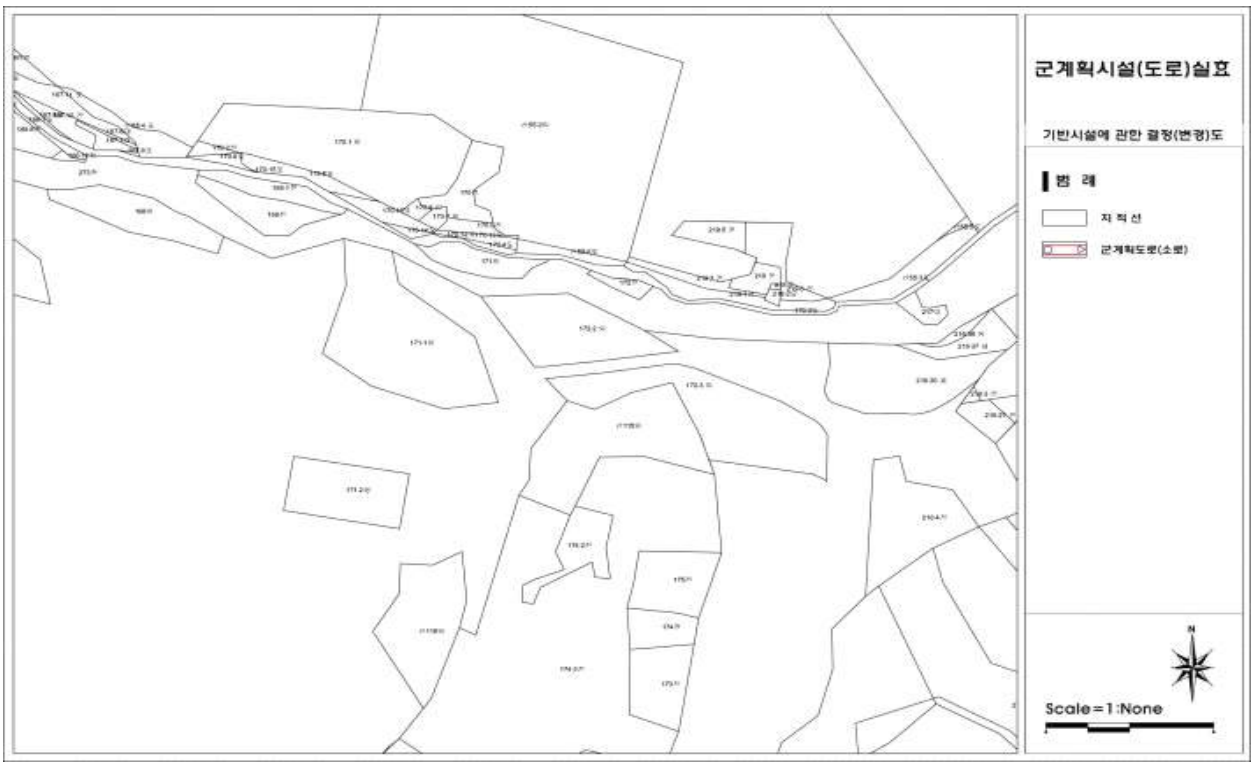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36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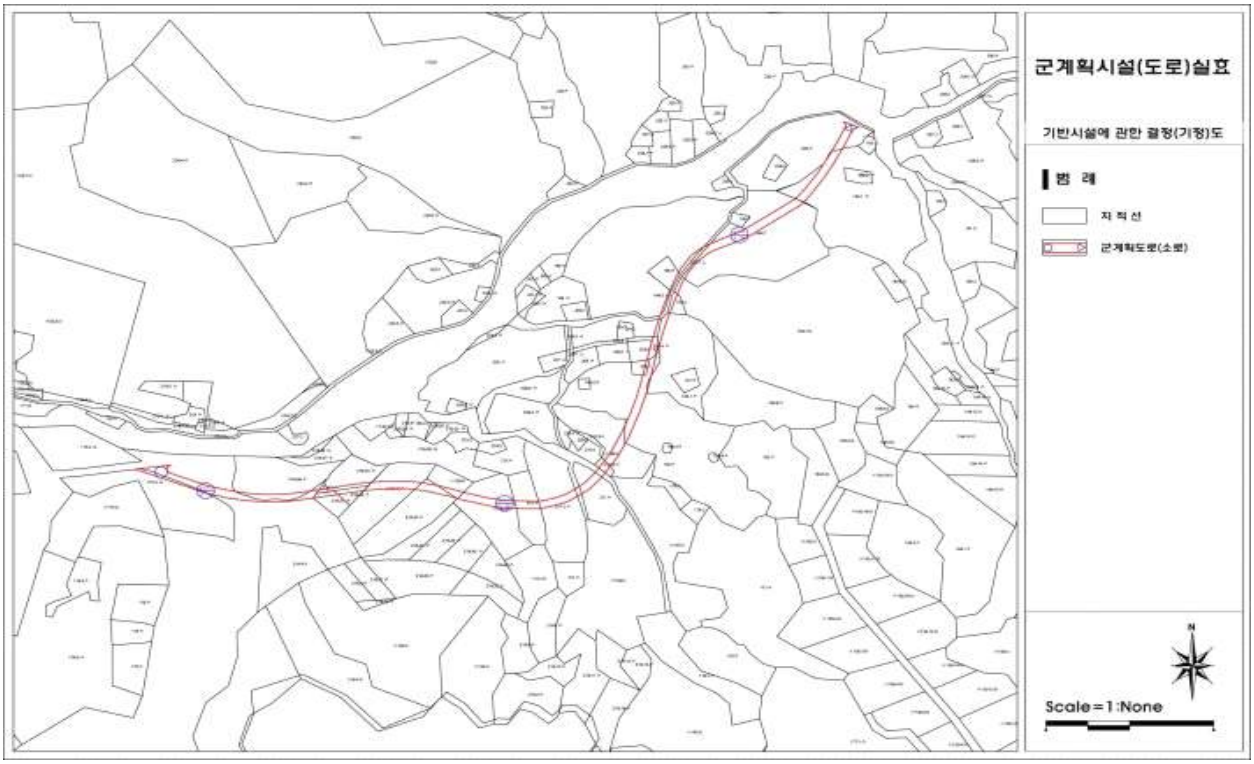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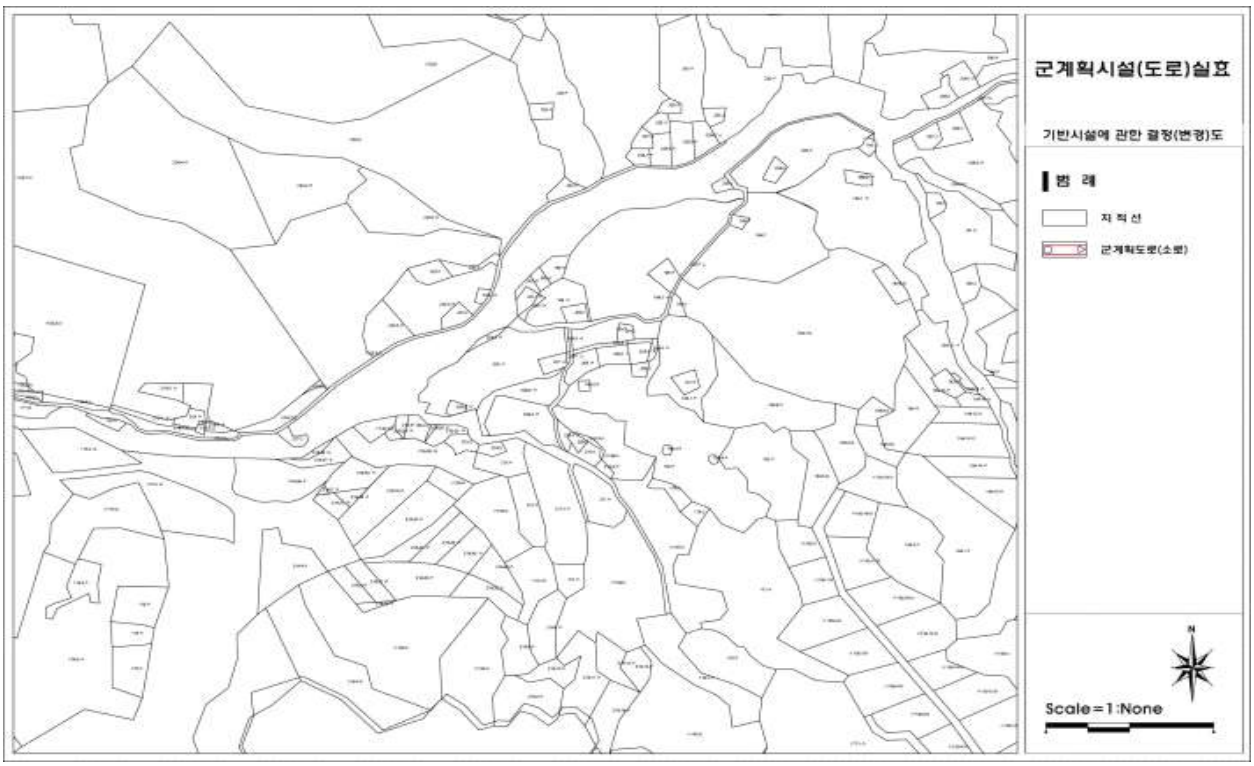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40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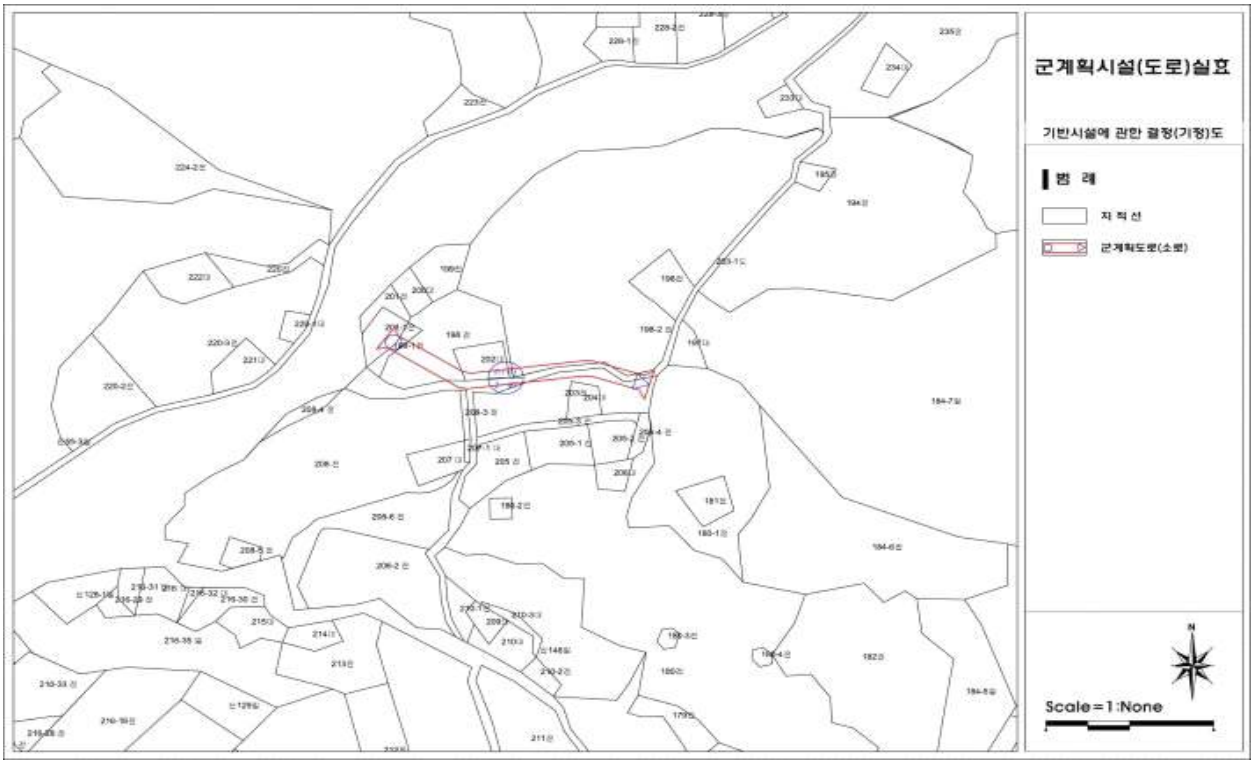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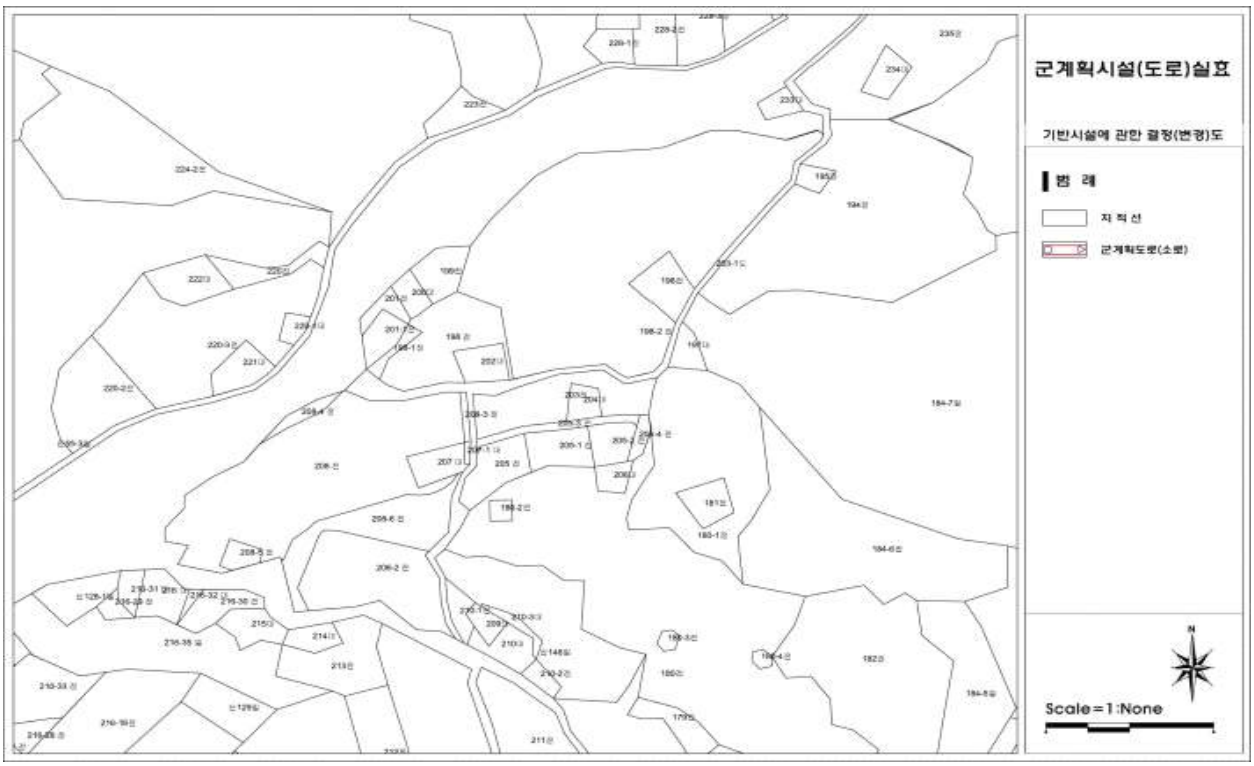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도시지역(소로2-52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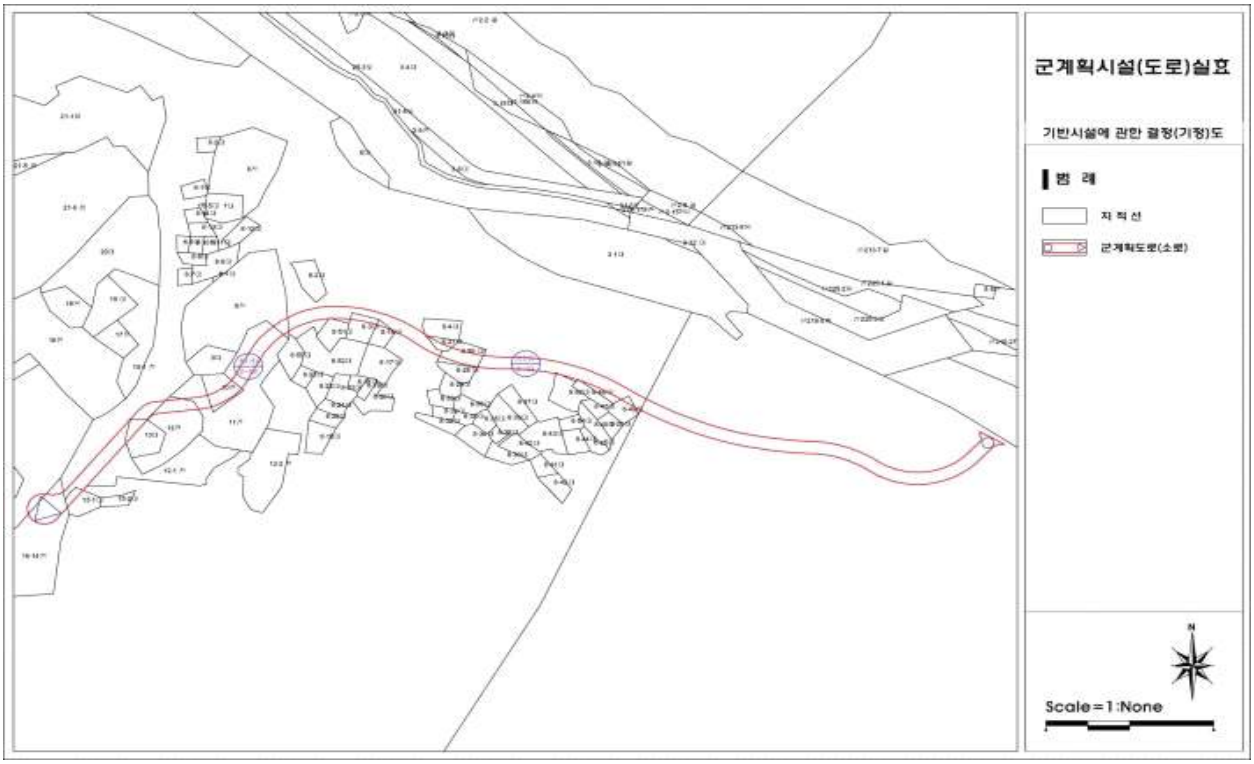

○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증산도시지역(소로3-13호선)

○ 기정

○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증산도시지역(소로3-21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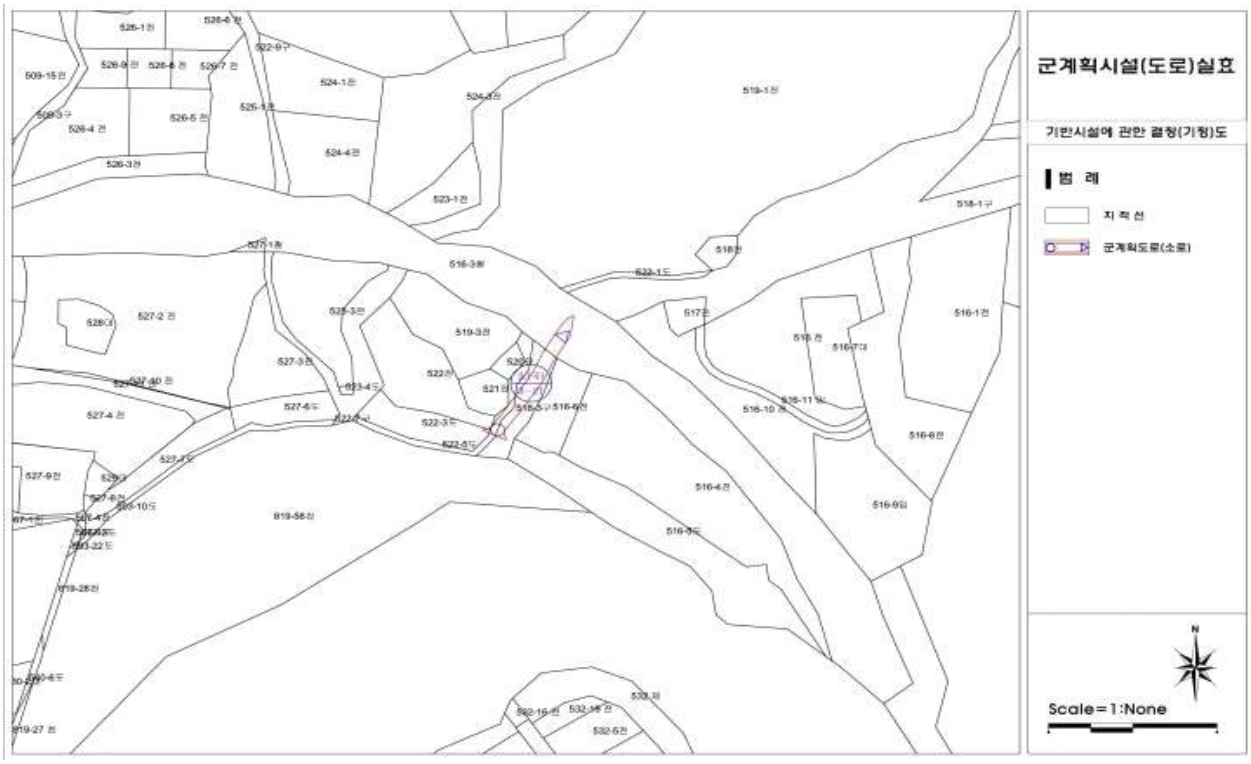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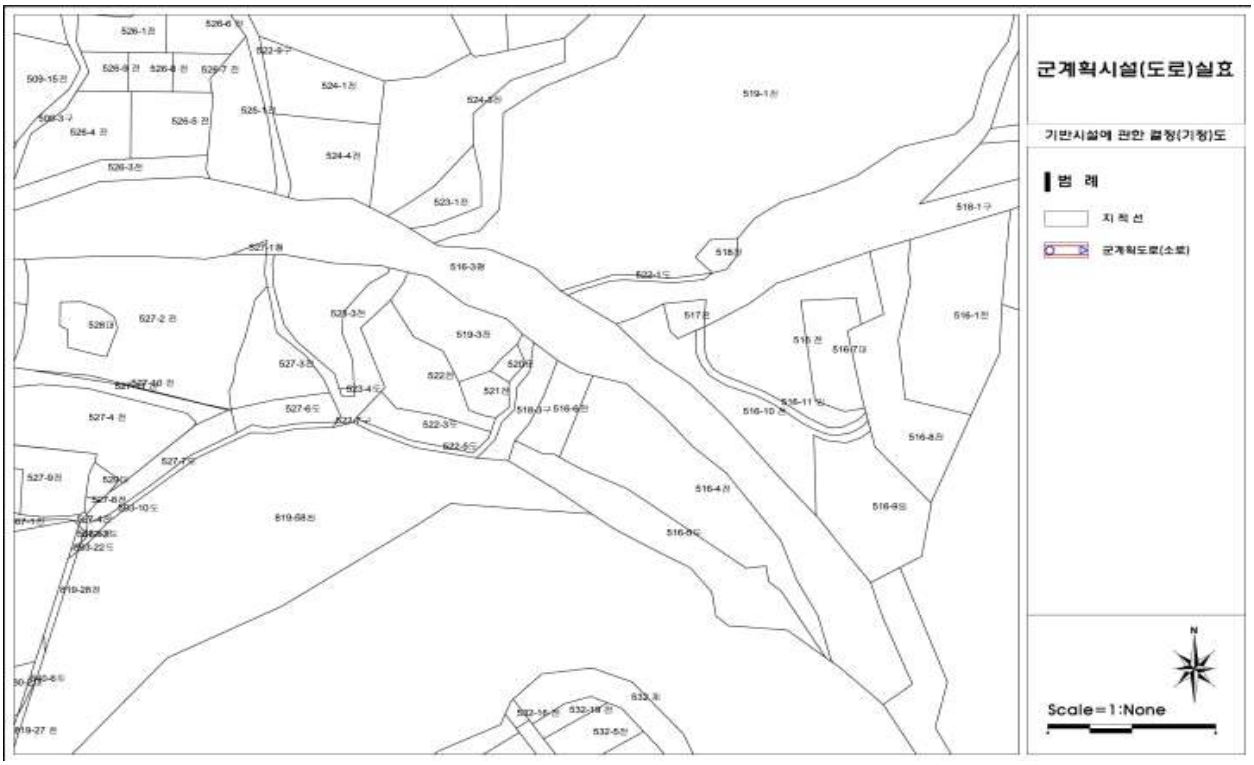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신동도시지역(주차장2)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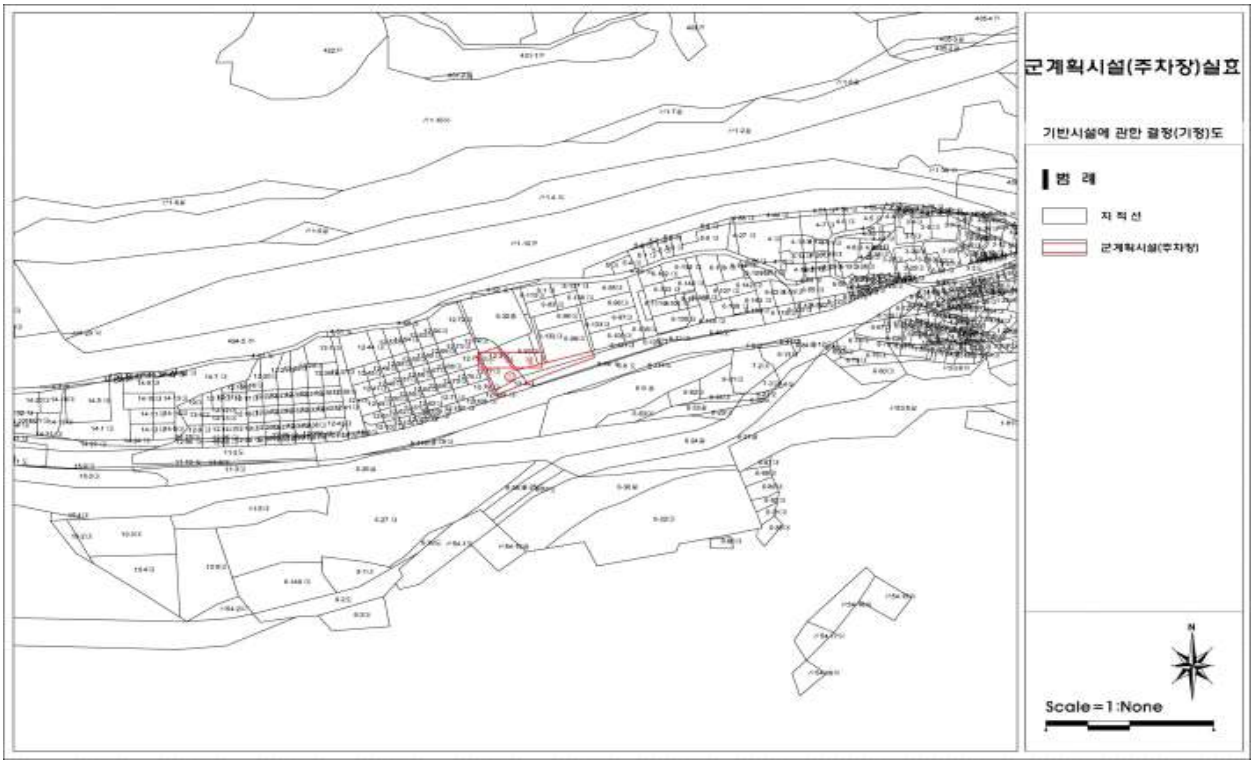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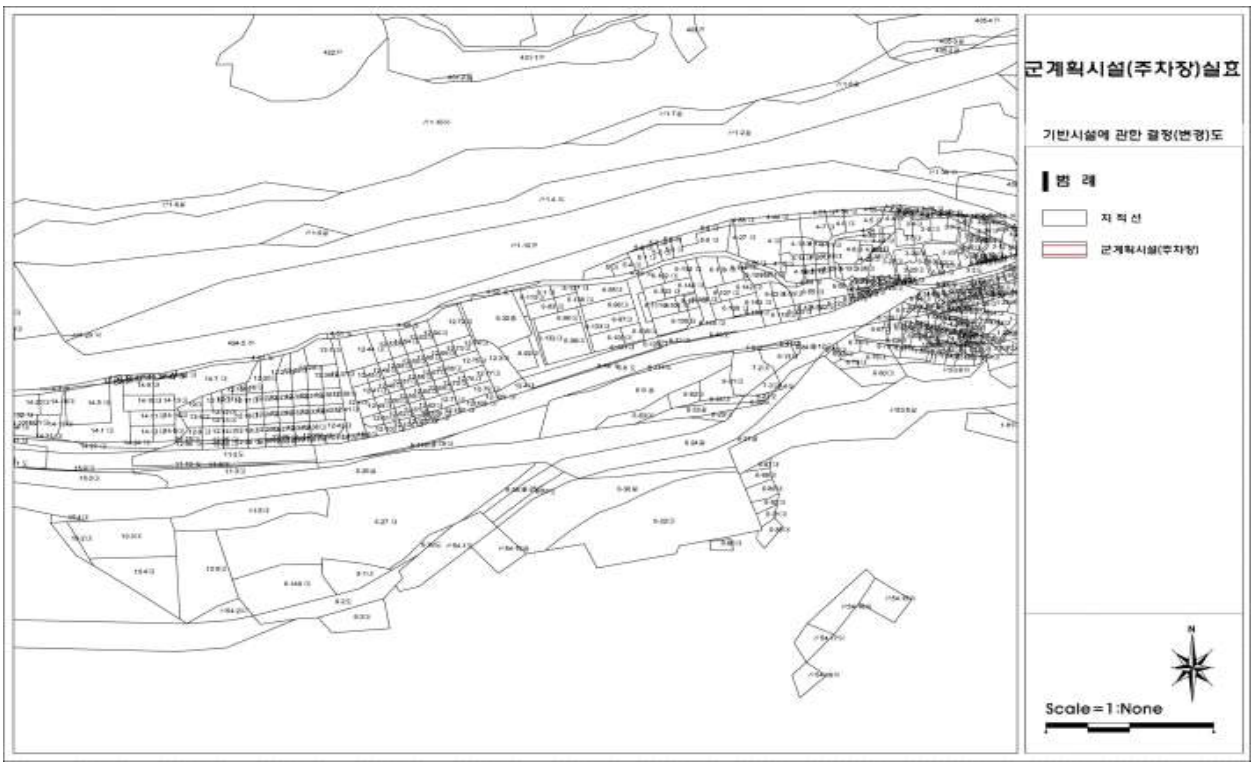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신동도시지역(주차장3)

○ 기정

○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 도시지역(어린이공원5)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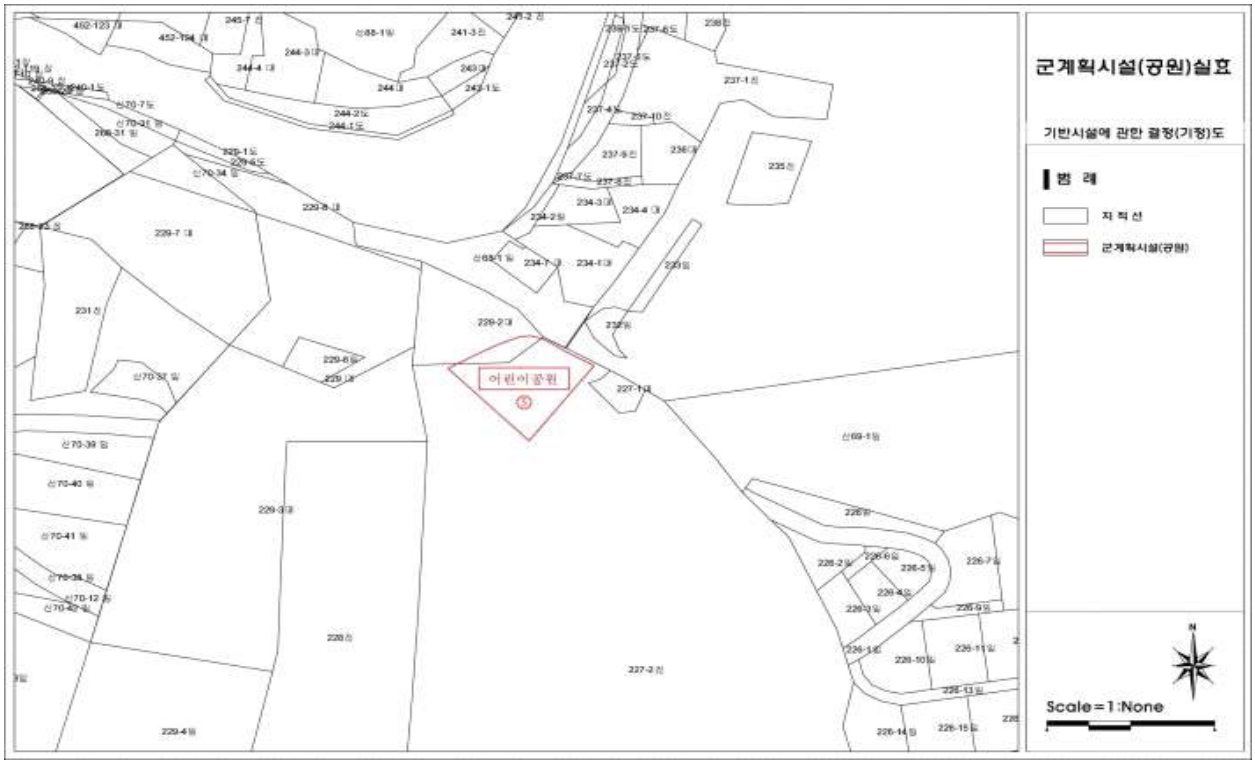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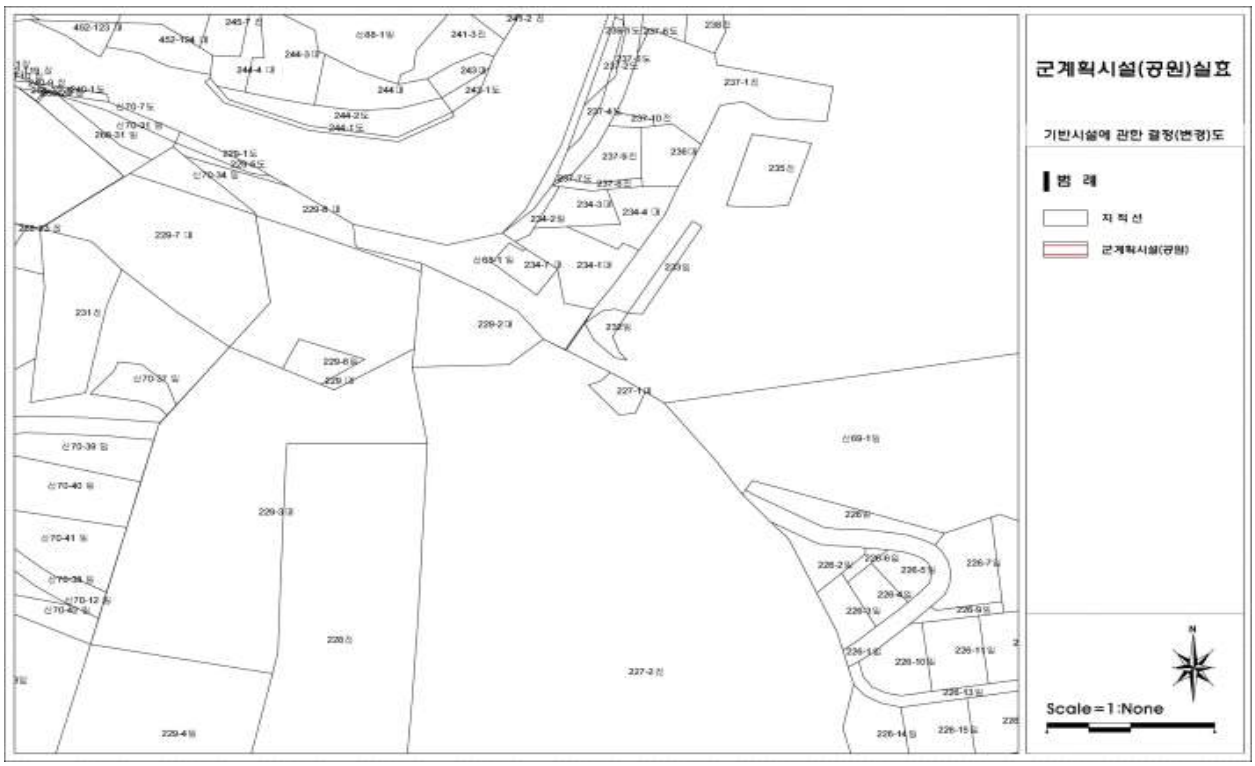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고한사북 도시지역(어린이공원7)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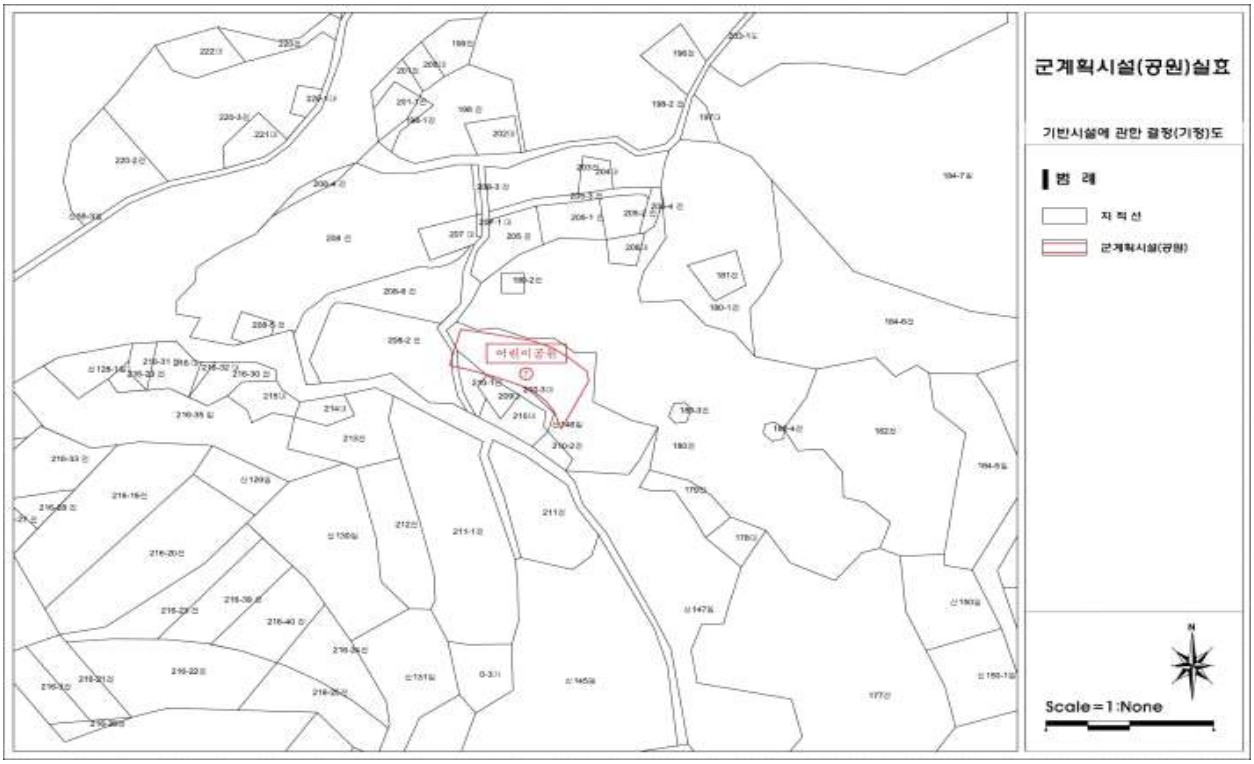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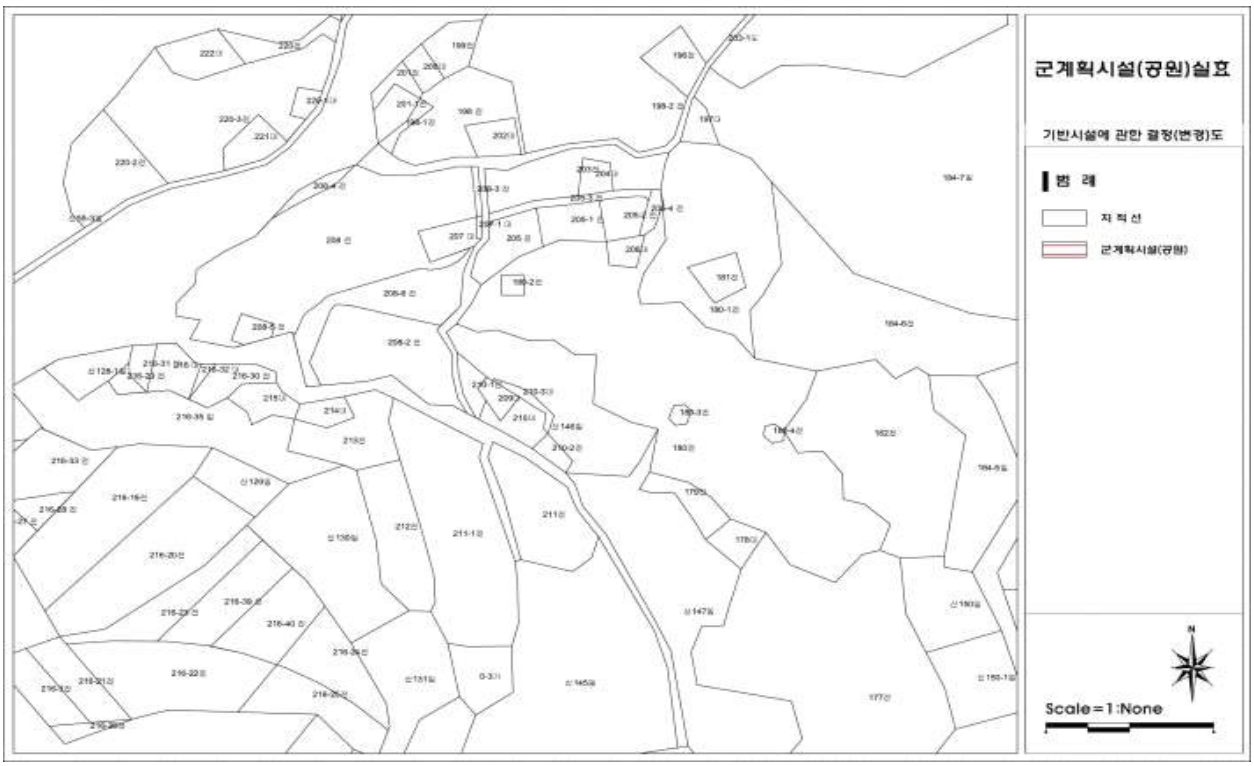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신동 도시지역(체육공원3)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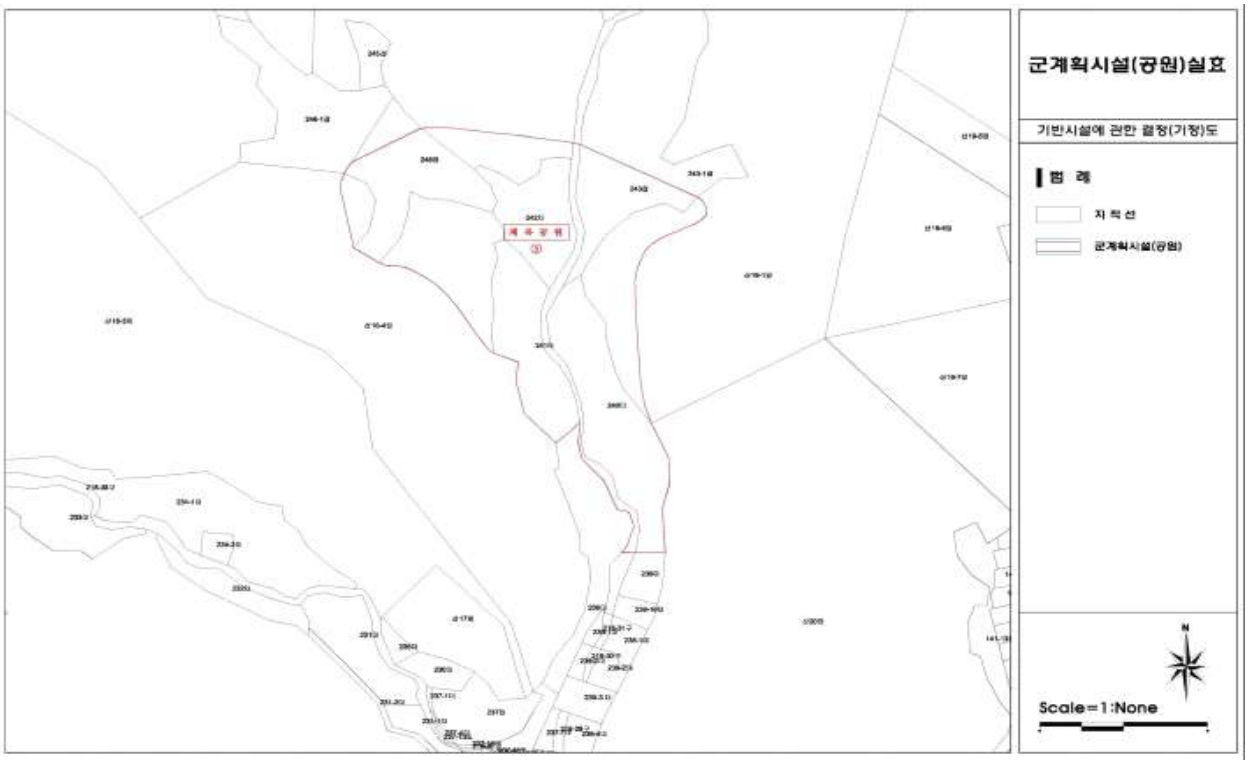

○ 변경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563호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9-45호(2019. 3. 15.)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403-2 ~ 신동읍 고성리 686-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사업
2)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정비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	금회시행	
하천 (고성천)	소하천	6.38㎞	0.35㎞ (양안 : 0.7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건설과)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2. 5. 13. ~ 2022. 5. 27.)

사. 공람장소 : 정선군 건설과(☎033-560-2493), 도시과(☎033-560-247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신동읍 고성리	366	전	545	5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102동 1201호	방*희	-	-	-
2	신동읍 고성리	303-1	도	1,190	25	-	국 (국토교통부)	-	-	-
3	신동읍 고성리	1048-18	구	83,603	338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4	신동읍 고성리	367	대	337	1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247-2	최*은	-	-	-
5	신동읍 고성리	368-1	도	183	79	-	국 (국토교통부)	-	-	-
6	신동읍 고성리	368	전	3,266	813	사북읍 사북리 304-4 사북광원임대아파트 나-505	최*두	-	-	-
7	신동읍 고성리	692-3	도	326	27	-	국 (국토교통부)	-	-	-
8	신동읍 고성리	372	전	1,160	158	신동읍 고성리 367	정*의	-	-	-
9	신동읍 고성리	373	구	456	247	-	국 (기획재정부)	-	-	-
10	신동읍 고성리	389	대	314	2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창말길 10	정*미	-	-	-
11	신동읍 고성리	388-1	전	991	38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08 203동 904호	정*진	-	-	-
12	신동읍 고성리	387-1	전	1,263	763	서울 광진구 중곡동 62-56	김*미	-	-	-
13	신동읍 고성리	387-4	도	63	52	-	정선군	-	-	-
14	신동읍 고성리	387-2	도	456	46	-	국 (국토교통부)	-	-	-
15	신동읍 고성리	383	구	575	86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16	신동읍 고성리	1048-17	도	662	269	-	국 (국토교통부)	-	-	-
17	신동읍 고성리	384	구	274	12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18	신동읍 고성리	385	구	261	146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계				95,925	3,641					

정선군 공고 제2022-571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1983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검토 대상 자치법규로 지정되어,
   나.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3. 주요내용
   가. 자동개폐기 도입에 따른 주차시간 산정방법 세분화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비용납부 방법 신설
   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2) 전화: 033-560-2512

3) 팩스: 033-560-2174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표 등)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9조(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원 부			
번 호		주차 장소	
차 종	보통 · 소형	차량 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 차 료	금 원정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전 면)

주 차 표			
번 호		주차 장소	
차 종	보통 · 소형	차량 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 차 료	금 원정		
○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직인)			

(전 면)

영 수 증			
번 호		주차 장소	
차 종	보통 · 소형	차량 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 차 료	금 원정		
○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직인)			

(이 면)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2호서식)

정 기 주 차 권

No

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정선군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정 선 군 수 (직인)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3호서식)

회 수 주 차 권(1일용)

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정선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정 선 군 수 (직인)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차량번호 : 귀하

주 차 장 소	차 종	사 용 일 시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가산금	합 계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보통 소형							

※ 만약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 20○○-○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20○○년 ○○월 ○○일

납입장소: 정선군 관내 농협

20○○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소

성명

영 수 필 통 지 서

제 20○○-○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20○○년 ○○월 ○○일

정 선 군 금 고 (인)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징수관		직급자	
수입금 출납원		기 장	
납 부 자			

영 수 증

제 20○○-○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의무면제)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20○○년 ○○월 ○○일

정 선 군 금 고 (인)

납부자

주소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정 선 군 수 (인)

과징금납부통지서(군청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

수납인

정 선 군 수 귀하

과징금영수증(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점, 지점

수납인

관계법령 발췌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공고 제2022-60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친환경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 면제 규정 마련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조항 추가 : 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나. 법률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내용 중 “제58조제10항” → “제58조제13항”
  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3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2) 전화: 033-560-2512

3) 팩스: 033-560-2174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방법에 의하지”를 “납부방법을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법에 의하지”를 “방법을 따르지”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3항”으로 한다.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충전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하되”를 “방법을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을 “예외로 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호에 따라”로, “「주차장법」”을 “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8항의”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30㎡당 1대(시설면적/13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세대당 1.5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

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

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 납부방법을 따르지 ---------- ---------- ---------- -.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방법을 따르지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충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② ---------- ----------

현 행	개 정 안
의 주차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 ---------- 같은 법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 ---------- ---------- ---------- ---------- ----------.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1.----------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제13조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1조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방법을 따르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	② ----------. ----------

현 행	개 정 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제한) ① ---------- ---------- ---------- ---------- ---------- ---------- ----. ---------- ---------- 예외로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 ---------- 법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 ----------제6조제2호에 따라 ---------- ---------- 법 ---------- - 제6조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따른 ---------- -.
②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별표 3과 같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 제18조 각 호의 ---------- .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② -------- 따른 ---------- . ---------- .

현 행	개 정 안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단서에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제3조제8항의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table>
<tr><td rowspan="2">1. 조례명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td><td colspan="8">2. 구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심사</td><td></td><td>존속기한연장</td><td></td></tr>
<tr><td>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정선군 시설국 안전과장 김영환
교통지도팀장 이정순, 주무관 문진희</td></tr>
<tr><td>4. 근거법령 등</td><td colspan="5">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td><td colspan="2">관련 규제수</td><td colspan="2">1</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피규제집단 :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이해관계자 : 일정면적 이상 시설물의 이용자, 건축 및 설치관계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조례 폐지시까지</td></tr>
<tr><td>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규제 강화 내용(현행 → 변경)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 시설면적 130㎡당 1대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세대당 1.5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정선군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건축물 신축 및 설치 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령은 20년 전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정선군의 경우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낮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건축물이 신축 또는 설치되어 고질적인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1-2) 규제의(신설·강화) 필요성 ○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 내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주차타워 건립요구, 추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 ○ 건축물 신축 및 설치 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현행 조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지정하고자 함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 달성방법 - 주차장 조성 및 주차타워 건립 등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나 부지 확보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증가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임 ○ 따라서,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 가능이 어렵고, 대안 가능한 규제가 없어 해당 규제를 통해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항 목	분 석 내 용
3. 비용과 편익분석 /비교	○ 규제의 비용 분석 - 본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없음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부설주차장이 강화된 3종의 시설물의 경우 기존 부설주차장 의무확보대수의 평균 약 30% 증가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가능대수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감소, 주민주차갈등 해소, 주변 교통흐름 개선 등 부설주차장 기준 강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증가 예상
4. 경쟁제한적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집행방법 등의 차별)이 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인지 검토 - 해당없음
5. 규제의 적정성	○ 규제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유사사례,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 - 강원도 18개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정함 ○ 상위법 위임근거가 있는지, 상위법 위임범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적정성 - 규제도입으로 인해 피규제자의 행정부담이나 처리절차는 변동 없음
6.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의 의견 기술 - 도시과 협의 : 생활형 숙박시설, 공동주택 기준 강화 - 입법예고를 통해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7. 규제집행의 실효성	○ 건축물의 의무보유 부설주차장 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집행가능성, 별도의 행정인력 및 예산 확대, 규제준수율의 변화는 없음

항 목	분 석 내 용
8.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 정선군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설정으로,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 및 주정차난 해소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자동차 등록대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발생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타 시군과 유사한 범위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규제 범위 수준이 적정하며, 주차난 해결, 불법주정차 감소, 민원 해소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